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상품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

각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제19.1조제3항 바호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나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는 그 밖의 조세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

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7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8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그 밖의 필수 생산품의 심각한 부족을 이유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생산품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비당사국의 상품 수입에 대하

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책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에서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과 규정을 유지하는 당사국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¹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한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을 정부의

¹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2.11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1.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14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1. 제16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7조에 규정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 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며, 그리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12개월 내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또는 조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제출된다.

제2.15조

관세율할당 운영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수립한 당사국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제5절 그 밖의 조치

제2.16조 국제수지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1994 년도 GATT 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 년도 GATT 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7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7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제7절

정의

제2.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및/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2-가

제 2.2 조, 제 2.9 조 및 제 2.12 조에 대한 예외

한국의 조치

제 2.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2.9 조(수입 및 수출 제한)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조치

1. 제 2.2 조와 제 2.9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1994 년 비코셔 육류 수입에 관한 이스라엘법」 및 그 개정에 따른 비코셔 육류의 수입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2. 제 2.9 조(수입 및 수출 제한) 및 제 2.12 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1991 년 무역 부과금 및 세이프가드 조치법」과 「1979 년 수출입령(신판)」 및 그 개정에 따라 금속 폐기물 및 부스러기의 수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유지하는 통제 및 부과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 항가호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스라엘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수입을 담당하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과의 접촉 및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제 1 항가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스라엘은 그 조치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2-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 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어,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

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15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2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5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75퍼센트가 유지된다.

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MFN-50%”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50퍼센트가 인하되어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기준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거.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너. 단계별 양허유형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품목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이스라엘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이스라엘 셰켈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2.5조(발효 및 종료)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의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이스라엘의 관세양허표

1. 상품 주문에 대한 관세와 면세 및 구매세(이하 “이스라엘 관세양허표”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 발효 중인 이스라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록 2-나-1
이스라엘의 관세율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이스라엘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에는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한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이스라엘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세계무역기구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쿼터 내 물량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관세양허표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이 부록에 기술된 생산품에 관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장에 따른 관세율할당은 다음과 같다.

냉동 닭고기

- 가. 02071200, 02071400으로 분류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 1,000메트릭톤의 연간 총량은 부속서 2-나 제1항하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MFN-50%”에 따라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로 반입이 허용된다.
-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 1 항거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참치 통조림

가. 16041490으로 분류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 200메트릭톤의 연간 총량은
무관세 반입이 허용된다.

나. 가호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 1 항거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주해
한국 양허표

1. 정의

가. **종가세**란 상품 가격의 백분율로 산정되는 세율을 말한다.

나. **종량세**란 개별 측정 단위별 세액을 말한다.

다. **선택관세**란 종가세나 종량세 중 어느 하나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2. 한국 기준세율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관세 적용

HSK 2016	기준세율
2501001010	1%
8523292231	20원/분(표준속도)
0706101000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3706903020	468원/m 또는 6.5%

가. 종가세

✓ 2501001010: 1%

나. 종량세

✓ 8523292231: 20원/분(표준속도)

다. 선택관세

✓ 0706101000: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 3706903020: 468원/m 또는 6.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양허표에 “-”로 표시된 48개 HS 코드 각각은 특정한 품목명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 위 행의 HS 코드로부터 파생된다. 이러한 행들은 그 위 행의 HS 코드와 기준세율이 상이하다.

주해
이스라엘 양허표

1. 정의

가. **세율(%)**이란 상품 가격의 백분율로 산정되는 세율을 말한다(종가세).

나. **단위별 세액(NIS)**이란 개별 측정 단위별 세액을 말한다(종량세).

다. **NIS**란 이스라엘 신 셰켈을 말한다.

라. **선택관세**란 종가세나 종량세 중 어느 하나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마. **복합관세**란 종가세와 종량세가 모두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유형을 말한다.

2. 이스라엘 기준세율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관세 적용

HSI 2016	기준세율					
	세율(%)	단위별 세액(NIS)	No More than(%)	No Less than(NIS)	측정 단위	쿼터
02031100	30	0	0	0	Kg	없음
03019190	0	2.5	0	0	Kg	없음
07112000	12	0	0	1.02	Kg	없음
01041090	0	6.22	170	0	Kg	없음
02109390	16	417	85	0	Tons	없음
15091010	12	4.68	0	5.73	Kg	없음

가. 종가세

✓ 02031100: 30%

나. 중량세

✓ 03019190: 2.5 NIS/Kg

다. 선택관세

✓ 07112000: 12% 또는 1.02 NIS/Kg, 양자 중 고액(율)

✓ 01041090: 6.22 NIS/Kg 또는 170%, 양자 중 저액(율)

라. 복합관세

✓ 02109390: [16%+417 NIS/Ton] 또는 [85%], 양자 중 저액(율)

✓ 15091010: [12%+4.68 NIS/Kg] 또는 [5.73 NIS/Kg], 양자 중 고액(율)